

부산광역시체육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 규정

부산광역시체육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 규정

제정 2021.06.23.

개정 2021.12.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53조제 1항에 따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장 대의원총회의 운영

제2조(총회 의결의 효력) ① 대의원총회(이하“총회”라 한다)의 의결에 반하는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의결은 효력이 없다.

②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3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정관 제11조에 따른 대의원이 해당 지위를 보유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총회 안건의 통지) ① 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에 올릴 안건을 개최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에 올릴 안건을 개최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관 제14조제3항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총회의 소집권자가 회의에 올릴 안건을 지체 없이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안건 부의의 제한) 총회에서 부결된 안건 또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안건은 부결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회의에 올릴 수 없다.

다만 재적이사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사일정) 의장은 총회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이를 회의장에 게시하거나 총회 구성원에게 유인물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 정족수 확인과 개회선언
2. 전차 회의결과
3. 보고사항
4. 심의사항
5. 기타사항
6. 폐회의 선언

제7조(개회선언) ① 의장은 개회시각이 되면 사회자로 하여금 출석자의 수를 확인하여 정관 제15조에 정한 의사정족수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사회자로부터 의사정족수에 도달되었음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개회를 선언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개회선언 후에 국민의례절차를 진행하고 간단한 개회인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의사록 통과) ① 의장은 개회 첫 순서로 사회자로 하여금 전차 총회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차 회의록에 수정 또는 가감할 것이 있으면 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수정 또는 가감하고 그 뜻을 의사록에 적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발언 및 진술 등) ① 총회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대의원은 거수하고 자기의 이름과 소속을 밝힌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② 2명 이상이 발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먼저 거수한 사람을 지명하여 발언하게 하여야 한다.

③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의사진행발언) 의장은 대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의체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바로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이를 허가한다.

제11조(질서유지) ① 대의원이 의장의 허가 없이 발언하거나 총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에는 의장은 이를 제지하고 그 발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대의원이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의 순서) 각종 안건의 심의는 의사일정에 정하여진 순서에 따라 심의한다. 다만, 총회가 달리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안건 부의와 제안 설명) ① 의장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심의에 들어가게 되면 제6조에 정한 순서에 따라 안건을 회의에 올릴 것을 선언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안건을 회의에 올리게 되면 먼저 사회자로 하여금 제안의 취지를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질의 및 토론) ① 제안 설명이 끝나면 대의원은 안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다.

② 질의가 속출하여 쉽게 끝나지 아니할 때에는 총회 구성원은 2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 질의종결의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질의종결 동의를 성립한 때에는 의장은 총회에 그 가부를 물어야 한다.

④ 더 이상 질의를 하는 사람이 없거나 제3항에 의한 질의종결동의를 가결된 때에는 의장은 질의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⑤ 질의가 종결되면 대의원은 회의 안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찬성 또는 반대의 토론을 할 수 있다.

⑥ 토론은 찬성과 반대의 순서로 교차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토론이 속출하여 쉽게 끝나지 아니할 때에는 총회 구성원은 2명 이상의 찬

성을 받아 토론종결의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⑧ 토론종결 동의를 성립한 때에는 의장은 총회에 그 가부를 물어야 한다.

⑨ 더 이상 토론을 하는 사람이 없거나 제8항에 의한 토론종결 동의를 가결된 때에는 의장은 토론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의, 개의 또는 재개의) ① 대의원은 토론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회의에 올린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동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은 동의를 성립되면 그 동의의 내용을 수정하는 동의로써 개의를 제출할 수 있고, 개이가 성립되면 또 다른 대의원은 재개의 또는 재재개의의 순서로 다른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동의 또는 개이는 어느 것이나 2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비로소 성립한다. 재개의 이하의 수정 동의도 같다.

제16조(표결) ① 의장은 토론이 종결되면 그 토론과정에서 성립된 동의와 각종 수정동의를 표결에 부쳐야 한다.

② 의장은 표결선언을 한 직후 그 표결방법을 총회에 문의하여 총회의 의사로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또는 규정으로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표결방법이 정하여지면 최종 수정 동의로부터 시작하여 원 동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의를 차례로 표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동의 또는 수정동의 중 어느 하나가 만장일치로 표결된 때에는 나머지 동의에 대한 표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④ 표결은 정관 제15조에 정한 의결정족수에 도달하여야만 가결되고, 이에 미달하면 부결된다.

⑤ 의장은 표결 결과를 확인하고 그 가부를 총회에 선포하여야 한다.

제17조(폐회) 의장은 의사일정에 따른 의안의 심의를 모두 마친 때에는 폐회를 선언하여야 한다.

제18조(의사록 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총회의 일시
2. 총회의 장소
3. 출석 구성원의 수
4. 의사의 경과 요령
5. 의사의 결과
6. 폐회

제19조(의사록의 기명날인) 의사록은 그 총회진행에 참여한 의장과 출석한 대의원 중 총회의 승인을 받아 지명한 대의원 1명이 기명날인한다.

제20조(비대면회의) ① 정관 제14조제7항에 따라 원격통신수단 또는 서면결의서 제출 등 비대면 방식으로 회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비공개 또는 무기명 투표가 필요한 안건은 의결할 수 없다.

② 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회의(이하 '원격 영상 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의원은 원격 영상 회의 시스템에 개별 접속하여 총회에 출석한다. 이 경우 대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원격 영상 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총회는 회의의 음성과 영상을 보관하여야 하며, 이 규정 제18조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원격 영상 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총회에는 정관 제11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없다.

③ 서면결의서 제출에 의한 총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서면결의서 제출에 의한 총회는 대의원 전부가 동일한 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결의서(전자적 서면결의서를 포함 한다)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2. 본인의 서명·인장이 기재·날인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의장은 서면결의 기간 종료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안건, 서면결의서 양식 등을 대의원에게 서면(전자적 문서를 포함 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서면결의서는 제3호에 따른 서면결의 시작일(통지일)로부터 서면결의서에 명시된 종료 일시까지 전자메일 등의 방식으로 의장에게 도달한 것까지 유효하다.
5. 서면결의서에 의한 심의·의결일은 제3호에 따른 서면결의서에 명시된 종료 일시로 하며, 이날 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6. 서면결의서 제출에 의한 총회는 안건을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21.12.24.]

[중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1.12.24.>]

제3장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정관 제23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이사로 구성한다.

[중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1.12.24.>]

제22조(안건 통지) ① 이사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에 올릴 안건을 회의개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관 제19조제4항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할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회의에 올릴 안건을 지체 없이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중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1.12.24.>]

제23조(대의원총회의 준용 등) ① 이사회의 의사진행과 발언, 의안심의 및 의사

록의 작성 등은 총회의 운영을 준용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의사록은 그 이사회 진행에 참여한 의장과 출석한 이사 중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 지명한 이사 1명이 기명날인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1.12.24.>]

제24조(비대면 이사회) ① 정관 제19조제7항에 따라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한 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 영상 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원격 영상 회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격 영상 회의 시스템에 접속한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원격 영상 회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사회는 회의의 음성과 영상을 보관하여야 하며,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정관 제22조에 따른 이사회 의사결의는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12.24.]

부 칙 (2021.0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